

의안번호	2216532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6.2.24.
추계번호	26C06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2항)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당음료부담금	의무규정
	안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가당음료제조업자등”)가 판매하는 가당음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제2항) 1.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1,000원 2.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 4.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5킬로그램 초과 7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5,500원 5.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7킬로그램 초과 1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8,000원 6.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0킬로그램 초과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11,000원 7.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3킬로그램 초과 16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15,000원 8.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6킬로그램 초과 2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0원 9.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100리터 당 28,000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2. 상세 사유

□ 기금의 설치등·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안 제22조·23조)

-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 수입 증가분의 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움
 - － 개정안 제2조제7호는 가당음료를 “설탕, 시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가당”으로 정의하여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첨가당 내 세부 부과 대상을 하위법령을 통해 정하도록 함
 - － 또한, 부과 대상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첨가당 함량에 따른 가당음료 공급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므로 부담금 수입 증가분을 계산하기 어려움¹⁾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생한 2023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음료류)²⁾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음료류 시장규모는 10조 3,120억원, 음료류 수입액은 4,690억원 수준이며, 이는 커피, 탄산음료, 혼합 음료, 액상차, 과채주스, 두유, 과채음료 등을 포함한 규모임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1) 참고로, 개정안은 가당식품제조업자등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가당식품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카페 또는 레스토랑 등에서 즉석 음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아닌 공장형태의 제조 시설을 갖춘 사업자나 수입업자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으로 보임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분석하는 보고서로, 매년 다양한 세분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2024년에는 간편식, 면류, 식육가공품, 유제품, 커피 등의 세분시장을 분석함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